



보도자료

다시, 대한민국!
새로운 국민의 나라

보도 일시	2022. 8. 30(화) 10:00	배포 일시	2022. 8. 29.(월)		
담당 부서 (총괄)	정책기획관	책임자	과장	박창규	(044-202-2320)
	재정운용담당관	담당자	서기관	구미정	(044-202-2321)

촘촘하고 두터운 약자복지를 위한 투자 확대

- 2023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올해 대비 11.8% 증가 -
- 8.30(화) 국무회의 심의·의결 통해 정부안 확정 -

< 2023년도 예산안 주요 내용 >

- 2023년 보건복지부 총 지출 : 108조 9,918억 원
 - 2022년 본예산(97조 4,767억 원) 대비 11조 5,151억 원 증가(11.8% ↑)
 - * '22년 총지출 증가율 8.8%, 최근 5년('18~'22) 평균 증가율 11.5%
 - 2022년 추가경정예산(101조 4,100억 원) 대비 7조 5,818억 원 증가(7.5% ↑)

(단위 : 조원)

구분	'22년		정부안 (C)	'23년			
	본예산 (A)	추경 (B)		본예산 대비(C-A)		추경 대비(C-B)	
				증감	%	증감	%
정부전체 총지출	607.7	679.5	639	31.3	5.2	△40.5	△6.0
보건복지부 총지출	97.5	101.4	109	11.5	11.8	7.6	7.5

□ 주요 투자 방향

1. 촘촘하고 두터운 사회안전망 구축

- (저소득층) 기준중위소득 5.47% 인상, 재산기준 완화 등 지원 확대
(+1조 7,245억 원*, (13조 3,880억 원 → 15조 1,125억 원)) * 생계·의료급여

- **(장애인)** 연금 및 장애수당 인상, 일자리 확대 등 **소득보장 강화**(+1,407억 원, 11,603→13,010억 원), 활동지원, 긴급돌봄 등 **돌봄 확대**(+3,226억 원, 20,977→24,203억 원)
 - **(아동)** 학대피해아동 보호·치유 위한 **인프라 확충**(+70억 원, 589→659억 원)
 - **(노인)**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4.7% 인상(+2조 4,164억 원, 16조 1,140억 원→ 18조 5,304억 원), **의료-돌봄 연계 체계 마련**(신규, 35억 원)
 - **(신(新) 복지수요)** 자립준비청년 지원 강화*(+214억 원, 352→ 566억 원), 가족돌봄청년, 고립·은둔청년, 고독사 등 새로운 복지 수요 대응 체계 마련(+6억 원, 10→16억 원)
- * 자립수당 인상, 의료비 지원사업 신설, 사례관리 확대

2. 복지 투자 혁신을 통한 복지-성장 선순환

- **(사회서비스 활성화)** 혁신펀드 조성, 신규 **생활서비스** 개발·보급 등 사회서비스 혁신(+368억 원, 246→614억 원)
- **(예방적 투자)** ICT 기반 **사전적·상시적 건강관리 강화**(+12억 원, 252→264억 원), 마음건강 투자 확대(+40억 원, 464→504억 원)
- **(저출산 대응)** **부모급여 지원**(+1조 2,518억 원, 3,731억 원→ 1조 6,249억 원)

3. 국민 생명·건강 보호 및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

- **(감염병 대응)** 긴급치료병상(1,700개) 및 국립재활원 음압격리병상(14개) 설치(신규, 2,608억 원)

- 보건복지부는 8.30(화) 국무회의에서 2023년도 정부 예산안이 확정되었으며, 내년도 예산을 통해 **촘촘하고 두터운 새 정부의 복지 정책**을 본격적으로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.

1 촘촘하고 두터운 사회안전망 구축

1 저소득층을 생계불안과 긴급한 위기로부터 적극 보호

- (생계·의료급여) 복지대상자 선정과 급여기준이 되는 '기준 중위소득'을 역대 최대 폭으로 인상(4인기준, 5.47% ↑)

* 1인 가구 6.84%, 2인 가구 6.01%, 4인 가구 5.47%(154→162만 원) 인상

< 연도별 기준 중위소득 및 증가율 (4인 가구) >

구 분	2018년	2019년	2020년	2021년	2022년	2023년
금액(만원)	452	461	475	488	512	540
전년대비 증가율(%)	1.16	2.09	2.94	2.68	5.02	5.47

-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 등을 고려한 주거용 재산기준 합리적 개편* 등 재산기준 완화를 통해 지원대상, 급여액 확대

* 현행 3급지(대도시, 중소도시, 농어촌) → 4급지(주거비의 지역별 차이를 고려해 지역을 4급지로 구분)

** 재산액 산정 시 공제하는 주거용 재산의 한도액(38~120백만 원→ 112~172백만 원), 기본재산공제액(29~69백만 원→ 53~99백만 원) 상향 ⇨ 생계급여 약 3만 5,000가구, 의료급여 약 1만 3,000가구 신규 수급(예상)

-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맞춰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지원 확대

* 의료급여 진료비 1종: 8,310,000원→8,800,000원(+490,000원), 2종: 2,118,000원→2,300,000원(+182,000) 등

- (긴급복지지원) 실직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실질적 도움이 될수 있도록 생계급여 수준*으로 지원금 인상

*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: ('22) 기본중위소득의 26% → ('23) 기본중위소득의 30%

- 처분이 곤란한 실거주 주택은 재산액 산정에서 제외하는 등 기준 현실화

*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신설(대도시 6,900만 원, 중소도시 4,200만 원, 농어촌 3,500만 원) / 생활준비금 공제율 확대(기준중위소득 65%→100%)



- (재난적 의료비) 서민들이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 대상 질환 확대, 지원기준 완화, 지원한도 상향 (400 → 568억 원, 42% ↑ * 복권기금)

- ▶ **【질환】** (현행) 입원은 모든 질환, 외래는 6대 중증질환 → (개선) 모든 질환
* 다만, 미용·성형, 특실료, 효과 미검증 고가치료법 등 비필수 의료비는 현행처럼 지원 제외
- ▶ **【지원기준】** 의료비 (현행) 연소득 대비 15% 초과시 → (개선) 10% 초과시 지원
재산 (현행) 과표 5억 4,000만 원 이하 → (개선) 7억 원 이하
- ▶ **【지원한도】** (현행) 년(年) 3,000만 원 → (개선) 최대 5,000만 원

2 소득·돌봄 등 장애인 맞춤형 지원 강화

- (소득·고용) 물가상승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연금(月 30.8 → 32.2만 원, 4.7% ↑), 장애수당(월(月) 4 → 6만 원) 대폭 인상
 - 장애인 일자리 신규 2,000개 확충(27.5 → 29.5만 개)을 통해 개인의 근로능력에 따른 맞춤형 경제적 지원 강화
- (돌봄) 장애인의 일상·사회생활 지원 및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활동지원서비스 단가 인상(14,805 → 15,570원, 5.2% ↑), 대상자 확대(+1.1만 명, 11.8만 명)
 - *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 활동지원 신규 지원(2,720명)
 - 장애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보호자의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돕기 위해 발달재활서비스 대상자 확대(+1만 명, 7.9만 명), 돌보미 지원시간 확대(연 840 → 960시간)
 - 발달장애인의 낮시간 활동을 충분히 보장(월 125 → 154시간)하고, 입원 등 보호자의 긴급상황에서도 돌봄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'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' 신규 도입(40개소)
- (개인예산제) 서비스 간 칸막이 제거, 수요자의 선택권을 강화할 수 있도록 장애인 개인예산제 단계적 도입 추진
 - * 장애인 개인예산제 1단계 시범사업 모델 개발 및 모의적용 연구 (5.8억 원, 신규)

③ 아동 보호 국가 책임 강화 및 공정한 출발 지원

○ (학대피해아동)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-치유-회복 지원 강화

- ▶ **【보호】** 학대피해아동쉼터(+36, 177개소), 아동보호 전문기관(+10, 105개소)
- ▶ **【치유】**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(+9, 17개소)
- ▶ **【회복지원】** 방문형 가정회복 프로그램(+200, 1,200가정)

○ (자립준비청년) 최소한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자립수당 인상(월(月) 30→40만 원) 및 의료비 지원사업* 신설

* 의료기관 이용 시 진료비 본인부담금 지원(8,000여 명, 연 15만 원)

- 자립지원전담기관 전담인력 확충(+60, 180명), 맞춤형 사례관리 지원 확대(+530, 2,000명), 자조모임 활성화 등 자립준비청년 지원체계 강화

④ 건강하고 질 높은 노후 생활을 위한 소득·건강·돌봄 지원 체계화

○ (기초연금) 가파른 물가상승을 반영한 기준연금액 인상(307,500→321,950원, 4.7%,↑)으로 국민연금 미가입·저연금 어르신들의 생활을 실질적 지원

- 국고보조율을 '22년 대비 약 1.5%p(80.52→82.04%) 인상하여 노인 인구 수 증가로 인한 지방비 부담 완화

○ (일자리) 높은 역량과 다양한 근로 욕구를 가진 베이비붐 세대를 위한 사회서비스형(7.0→8.5만개), 시장형(16.7→19.0만개) 일자리를 확대하고, 공익활동형은 돌봄·안전 등 공익적 가치가 보다 높은 사업 중심으로 단계적 개편

○ (지역 의료·돌봄 연계체계 구축) 요양병원·시설 입소 경계선 상에 있는 노인 등을 대상으로 집에서 일상적·주기적으로 의료·돌봄 서비스를 연계 제공하는 시범사업 실시(12개 시군구)

⑤ 신(新) 복지수요에 적극 대응하여 복지 사각지대 최소화

- (사각지대 발굴) 단전, 단수, 건보료 체납 등 위기 정보(39종)를 활용하여 취약계층의 위기 상황을 정확하고 빠르게 예측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
 - 인공지능(AI) 복지사* 시스템을 통한 상담 실시로 사각지대 발굴 초기 상담 증대, 지자체 복지업무 담당자는 고위험군 집중 상담을 통해 국민 복지체감도 제고
 - * 복지대상자의 복지 욕구 파악 등 초기상담을 수행하는 인공지능 음성인식시스템
- (취약청년) 가족돌봄청년(영케어러), 고립·은둔청년 등 신(新) 취약청년 복지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실태조사 실시
 - * ‘가족돌봄청년 복지욕구 및 실태조사’, ‘고립·은둔 실태조사’ 등
- (고독사 대응) 고독사 위험자를 발굴하여 안부 확인 및 생활 지원, 심리 지원 등 지역별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사업 실시(9개 시도, '22.8.~'23.12),

□ 보건복지부는 새 정부 복지정책의 핵심인 ‘저소득·취약계층에 대한 보다 촘촘하고 두터운 보호’를 추진하는 한편,

-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를 개발·확산하고, 사전예방적 투자와 저출산 대응을 통해 복지-성장 선순환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.

2 복지 투자 혁신을 통한 복지-성장 선순환

① 민간 참여 확대 및 새로운 수요 창출로 사회서비스 활성화

- (사회서비스 혁신 펀드) 혁신적 사회서비스 공급기관의 창업·성장 지원 및 사회서비스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정부와 민간 재원을 혼합한 사회서비스 혁신 펀드 신규 조성(100억 원 출자)
- (사회서비스 개발·지원) 가족돌봄 청년, 중장년 1인 가구, 한부모 가구 등 새로운 사회서비스 수요에 대응하여 생활 사회서비스*(약 3만 2000가구, 月 20만 원) 개발·보급,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을 차등화하여 고품질의 보편적 서비스 시장 창출
 - * (예시) 가사지원서비스, 병원동행서비스, 심리상담 등

2 미래 지출 소요 감축을 위한 예방적·사전적 투자 강화

- (예방적 건강관리) 만성질환 위험군에 대하여 모바일을 기반으로 사전적·상시적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'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확대(+20, 200개소)
 - 방문건강관리, 건강증진 프로그램 등 다양한 정보통신기술(ICT) 기반 보건소 건강관리 사업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 향상 및 사업 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해 통합 플랫폼 구축
 - * 오픈 소스로 개발, 향후 신규 보건소 정보통신기술(ICT) 기반 사업 확장 기반 마련
- (마음건강 투자 확대) 정신건강 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신의료기관 환경 개선(시설·장비비 지원 +10, 30개소) 및 자살 고위험군 치료비 지원 사업* 신설, 자살예방센터 인력 확충**(+33명, 500명) 등 투자 확대
 - * 치료가 필요한 자살시도자·자살 유족 중 저소득층(1인당 年 100만 원 이내, 총 5억 원)
 - ** 자살예방법 개정('22.8.)으로 경찰·소방에서 당사자 동의 이전 자살예방센터로 자살 고위험군 정보연계, 이에 따른 사례관리 업무 증가

3 저출산 대응을 위한 안정적 양육환경 지원

- (부모급여) 출산 및 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을 보장하고, 영아기 돌봄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2023년부터 만 0세 아동에 월 70만원(만 1세 아동 월 35만 원)의 부모급여 지급

(단위: 만원)

구 분	'22년	'23년	'24년(예정)
만 0세	30(영아수당)	70	100
만 1세	30(영아수당)	35	50

- (보육환경 개선) 연장형 보육료 단가(3,200→4,000원, 25% ↑), 연장보육 지원 대상 확대(+60,000명, 480,000명) 등을 통해 맞벌이 가정의 돌봄부담 완화 및 돌봄공백 해소
 -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(+35개소,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(+2) 포함), 리모델링과 장기 임차를 통한 기존 민간·가정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 등 공공보육 인프라 확충(+540개소)

□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코로나19 대응, 의료취약지 해소를 위한 노력과 함께, 바이오헬스 산업을 육성을 위한 투자도 확대한다.

3

국민 생명·건강 보호 및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

1 국민 생명 보호를 위한 감염병 대응 인프라 확충 및 의료 지원 강화

- (중증환자 병상 확보) 감염병 환자가 상시 입원할 수 있는 긴급치료 및 응급·특수(소아·분만·투석) 병상을 1,700개 확충(617병상 → 2,317병상)
 - 장애가 있는 감염병 환자 발생시에도 신속·적절한 의료 대응이 가능하도록 국립재활원에 전용 음압격리병상 신규 설치(14병상, 35억 원)
- (의료취약지 지원) 지방의료원 신·증축 및 기능보강 지속*, 분만 인프라 강화를 위한 시설·장비 지원(+3개소, 54개소), 고위험 신생아 집중치료실 지원 확대(+15개, 457병상)
 - * 신축 위한 설계(1개소), 증축 계속 사업(11개소) 등 지원(총 1,118억 원)

2 디지털·바이오헬스 중심 국가 도약을 위한 투자 확대

- (보건의료 데이터) 건강정보 고속도로* 참여의료기관 확산(종합병원급 이상 +29개소) 및 실증(96억 원, 신규)을 통한 의료 마이데이터 활성화 기반 마련
 - * 개인의 보건의료 데이터를 안전하게 관리·중계하여 맞춤형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('23.상(上), 시스템 구축완료)
 - 암전문데이터 정보시스템(74억 원, 신규),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 시스템(61억 원, 신규), 의약품관리종합정보시스템(4억, 신규) 등 보건의료 정보화 확대
- (디지털 헬스) 진료정보교류 의료기관 확대(+1,000, 8,500개소), 의료기관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(75억 원) 및 원격협진 모형(3억 원)에 대한 실증 실시
- (바이오헬스 R&D) 감염병, 암 및 고부담·난치성 질환 등 보건안보 및 국가난제 해결을 위한 연구개발(R&D) 확대(21개 신규사업, 1,057억 원)
 -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를 위하여 항바이러스 치료제 개발(37.5억 원), 백신·치료제 신속 비임상시험 실증 개발(30억 원) 등 지원
 - 고부담·난치성 질환 극복을 위하여 암 생존자 맞춤형 헬스케어 기술개발(96억 원), 이종장기 연구개발(60억 원), 인공혈액 제조 및 실증 플랫폼 개발(16억 원) 등 연구개발(R&D) 투자 확대

□ 2023년도 보건복지부 재정 규모는 108조 9,918억 원으로, 2022년도 본예산 97조 4,767억 원 대비 11.8% 증가하였다.

* 최근 5년('18~'22) 평균 증가율 11.5%, '22년 증가율 8.8%

- 반면 정부 총지출은 639조 원으로 전년 대비 약 5% 증가하여, 정부 총지출 중 보건복지부가 차지하는 비중은 1%p 상승하였다(16.0→ 17.0%).
- 보건복지부 고득영 기획조정실장은 “정부의 예산 편성방향이 확장에서 건전 재정 기조로 전환됐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 재정규모는 예년보다 확대 편성하였다. 이는 재정지출을 줄이더라도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보다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새 정부의 복지정책 방향을 예산안에 표현한 것”이라고 설명하였다.

< 2023년 보건복지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(안) >

(단위 : 억원)

구분	2022년 본예산(A)	2023년 정부안(B)	전년대비	
			증감 (B-A)	%
총 지출(A+B)	974,767	1,089,918	115,151	11.8
◇ 예산 (A)	622,729	679,735	57,006	9.2
◇ 기금 (B)	352,038	410,183	58,145	16.5
◇ 사회복지 ①	806,484	920,659	114,175	14.2
○ 기초생활보장	144,597	164,059	19,462	13.5
○ 취약계층지원	41,482	46,026	4,544	11.0
○ 공적연금	314,921	371,590	56,669	18.0
○ 아동·보육	91,820	98,206	6,386	7.0
○ 노인	204,592	231,143	26,551	13.0
○ 사회복지일반	9,072	9,634	562	6.2
◇ 보건 ②	168,283	169,259	976	0.6
○ 보건의료	49,041	45,157	△3,884	△7.9
○ 건강보험	119,242	124,102	4,860	4.1

- <붙임> 1. 정책 대상별 주요 지원 내용
2. 분야별 주요 예산 반영 현황
3. 복지부 예산안 주요 사업

담당 부서	정책기획관	책임자	과 장	박창규 (044-202-2320)
<총괄>	재정운용담당관	담당자	서기관	구미정 (044-202-2321)
<생계>	복지정책관	책임자	과 장	민영신 (044-202-3051)
	기초생활보장과	담당자	사무관	정서영 (044-202-3054)
<긴급>	복지정책관	책임자	과 장	민영신 (044-202-3051)
	기초생활보장과	담당자	사무관	전인수 (044-202-3058)
<의료>	복지정책관	책임자	과 장	백진주 (044-202-3090)
	기초의료보장과	담당자	사무관	김행미 (044-202-3097)
<의료돌봄연계>	복지정책관	책임자	단 장	손호준 (044-202-3030)
	통합돌봄추진단	담당자	사무관	유미혜 (044-202-3032)
<사각지대발굴>	복지행정관	책임자	과 장	장은섭 (044-202-3160)
	복지정보기획과	담당자	사무관	백승대 (044-202-3172)
<고독사>	복지행정지원관	책임자	과 장	오진희 (044-202-3120)
	지역복지과	담당자	사무관	황인구 (044-202-3134)
<사회서비스 투자펀드>	사회서비스정책관	책임자	과 장	임은정 (044-202-3210)
	사회서비스정책과	담당자	서기관	양승호 (044-202-3212)
<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>	사회서비스정책관	책임자	과 장	김민정 (044-202-3220)
	사회서비스사업과	담당자	사무관	김현철 (044-202-3224)
<장애인예산제>	장애인정책국	책임자	과 장	최봉근 (044-202-3280)
	장애인정책과	담당자	사무관	박용준 (044-202-3285)
<장애인연금>	장애인정책국	책임자	과 장	신재형 (044-202-3320)
	장애인자립기반과	담당자	사무관	권오경 (044-202-3321)
<장애인활동지원>	장애인정책국	책임자	과 장	백경순 (044-202-3340)
	장애인서비스과	담당자	사무관	유운용 (044-202-3341)
<취약청년>	인구아동정책관	책임자	과 장	이선영 (044-202-3370)
	인구정책총괄과	담당자	사무관	박진웅 (044-202-3702)
<자립준비청년>	인구아동정책관	책임자	과 장	송양수 (044-202-3430)
	아동권리과	담당자	사무관	이예진 (044-202-3443)
<아동 학대>	인구아동정책관	책임자	과 장	김혜래 (044-202-3380)
	아동 학대대응과	담당자	사무관	박종한 (044-202-3384)
<부모급여>	보육정책관	책임자	과 장	홍승령 (044-202-3560)
	보육사업기획과	담당자	사무관	이효진 (044-202-3571)
<보육료>	보육정책관	책임자	과 장	홍승령 (044-202-3560)
	보육사업기획과	담당자	서기관	김은경 (044-202-3562)

<어린이집>	보육정책관	책임자	과 장	유보영	(044-202-3540)
	보육정책과	담당자	사무관	박지혜	(044-202-3542)
<기초연금>	연금정책국	책임자	과 장	송명준	(044-202-3670)
	기초연금과	담당자	사무관	정의서	(044-202-3681)
<노인일자리>	노인정책관	책임자	과 장	주 철	(044-202-3470)
	노인지원과	담당자	사무관	강선명	(044-202-3477)
<의료취약지>	공공보건정책과	책임자	과 장	신옥수	(044-202-2530)
	공공의료과	담당자	사무관	강소영	(044-202-2535)
<재난적의료비>	의료보장심의관	책임자	과 장	강 준	(044-202-2680)
	의료보장관리과	담당자	사무관	박지민	(044-202-2681)
<모바일헬스케어>	건강정책국	책임자	과 장	곽순헌	(044-202-1790)
	건강정책과	담당자	사무관	유문수	(044-202-2808)
<정신건강>	정신건강정책관	책임자	과 장	김한숙	(044-202-3860)
	정신건강정책과	담당자	서기관	도혜진	(044-202-3866)
<자살예방>	정신건강정책관	책임자	과 장	원소윤	(044-202-3890)
	자살예방정책과	담당자	사무관	김유진	(044-202-3893)
<디지털헬스>	보건산업정책국	책임자	과 장	정연희	(044-202-2920)
	의료정보정책과	담당자	사무관	이길원	(044-202-2926)
<바이오헬스>	첨단의료지원관	책임자	과 장	서일환	(044-202-2001)
	보건의료기술개발과	담당자	사무관	박재홍	(044-202-2861)
<긴급병상>	코로나19중앙사고수습본부	책임자	팀 장	곽순헌	(044-202-1790)
	환자병상·치료시설팀	담당자	사무관	박영호	(044-202-1781)

붙임 1

정책 대상별 주요 지원 내용

		과 제	2022년	2023년	주요 내용
저 소 부 층	생계급여		89.8만 가구	110만 가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기준중위소득 5.47% 인상 * 4인 가구 기준 ■ 재산기준 지역구분 개편 * 3급지(대도시/중소도시/농어촌)→ 4급지(서울/경기/광역시.세종.창원/기타)
	의료급여		161만 명	169만 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기본진료비 단가인상 ■ 재산기준 지역구분 개편 * 3급지(대도시/중소도시/농어촌)→ 4급지(서울/경기/광역시.세종.창원/기타)
	긴급복지		37만 건	52만 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생계지원비 단가 인상 (기준중위소득 26→30%) ■ 선정 기준 완화 * 주거용 재산 공제, 생활준비금 공제율 상향(기준중위 65%→100%) ('22.7월~)
	자활근로		일 58,660원 * 시장진입형 기준	일 60,420원 * 시장진입형 기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자활급여 전년 대비 3% 인상 * 대상 6만 6천명(전년동)
	재난적 의료비		年 3천만원	年 5천만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지원한도 상향 * 연 3천만원→ 5천만원 ■ 대상 질환 확대 * (외래) 6대 중증질환→ 모든질환 ■ 의료비 기준 하향 * 연소득 15% 초과시→ 10% 초과시

		과 제	2022년	2023년	주요 내용
노 인 · 장 애 인	노인 일자리	23.7만 명 (총 84.5만 명)	27.5만 명 (총 82.2만 명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시장형·사회서비스형 3.8만개 확대 * 23.7만 명→ 27.5만 명 ■ 공익활동형 6.1만개 축소 * 60.8만 명→ 54.7만 명 	
	기초연금	628만 명	665만 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65세 이상 대상 확대(+37만 명) ■ 단가 인상 4.7% * 월 최대 307,500→ 321,950원 ■ 국고보조율 상승 * 80.52%→ 82.04% 	
	노인 맞춤형돌봄	50만 명	55만 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대상확대자 확대(+5만 명) 	
	장애인 활동지원	10만 7천 명 *실수급자 13만명	11만 8천 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대상확대: +1.1만 명 *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(2,720명) 신규 지원 ■ 단가인상: +765원/시간 * 중증장애인 가산수당 단가 인상 (+1000원/시간) 	
	발달 장애인 지원 (주간활동)	월 125시간 (확장형 165시간)	월 154시간 (확장형 176시간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주간활동서비스 제공시간 확대 ■ 단가인상: +765원/시간 	
	장애아 가족 양육지원	연 840시간	연 960시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중증 장애아동 가정 돌봄서비스 제공 시간 확대(+120시간) ■ 단가인상 : +570원/시간 	
	장애인 일자리	27,546명	29,546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만18세 이상 장애인 대상 일자리 지원 확대(+2천 명) ■ 최저임금 반영 	

		과 제	2022년	2023년	주요 내용
아 동 · 청 년		부모급여 (영아수당)	月 30만 원 (0~1세)	月 70만 원 (1세 35만 원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'23.1.1.부터 만 0세 아동에게 월 70만원(만 1세 35만원) 지급 * ('24년) 만 0세 100만 원/월, 만 1세 50만 원/월
		기저귀 조제분유 지원	82천 명	93천 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저소득층 영아(0~24개월) 가정에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고물가 등 경제상황 반영하여 지원 단가 및 물량 확대 * (기저귀) 64→80천원/월, +11천명 (조제분유) 86→ 100천원/월, +167명
		자립수당	9,982명 月 30만 원	12,000명 月 40만 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보호가 종료된 청년의 안정적 자립 위해 지원 단가 인상(+10만원/월)
		자립준비 청년 사례관리	1,470명	2,000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보호 종료 청년의 안정적 사회 정착 지원을 위한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제공
		자립준비 청년 의료비지원	('23년 신규)	8,000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통해 최소한의 건강한 생활 보장 * 건강보험가입자의 본인부담금 지원 (15만원/년)

과 제		2022년	2023년	주요 내용
보 건 의 료	정신의료 기관 환경 개선	20개소	30개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정신의료기관 입원환경을 치료 친환적으로 개선하는데 필요한 시설·장비비 지원(+10개소)
	분만 취약지 지원	51개소	54개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분만 가능한 산부인과가 없는 취약지역에 시설·장비 및 운영 지원(+3개소)
	자살 고위험군 치료비 지원	(‘23년 신규)	500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치료 접근성 향상 위해 저소득층 자살시도자 및 유족 대상 치료비 지원 * 1인당 최대 1백만원
	자살예방 안전망 강화	467명 (자살예방 전담인력)	500명 (자살예방 전담인력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자살예방 전담인력 단계적 확대 (+33명)
	모바일 헬스케어	180개 시·군·구	200개 시·군·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만 65세 이하 건강위험군의 만성질환 예방·관리 사업 확대
	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	95명 (박사과정)	125명 (박사과정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위해 임상경험과 연구능력을 갖춘 의사과학자 양성 지원
	의료기관 진료정보 교류	500개소 (누적 7,500개소)	1,000개소 (누적 8,500개소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의료기관 간 환자 진료정보 교류로 중복검사·처방 방지, 환자 안전강화 및 의료서비스 질 향상

붙임 2

분야별 주요예산 반영 현황

1] 촘촘하고 두터운 사회안전망 구축

◇ 저소득층 보호

- 생계급여 : ('22) 52,648 → ('23안) 60,141억 원(7,494억 원, 14.2%)
- 의료급여 : ('22) 81,232 → ('23안) 90,984억 원(9,751억 원, 12.0%)
- 긴급복지 ('22) 2,156 → ('23안) 3,155억 원(998억 원, 46.3%)
-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('22) 400 → ('23안) 568억 원(168억 원, 42%) * 복권기금

◇ 장애인 맞춤형 지원

- 장애인연금 : ('22) 8,326 → ('23안) 8,787억 원(460억 원, 5.5%)
- 장애수당(기초) : ('22) 816 → ('23안) 1,429억 원(613억 원, 75.1%)
- 장애수당(차상위 등) ('22) 608 → ('23안) 721억 원(113억 원, 18.5%)
- 장애인일자리지원 : ('22) 1,853 → ('23안) 2,073억 원(220억 원, 11.9%)
- 장애인활동지원 : ('22) 17,405 → ('23안) 19,919억 원(2,514억 원, 14.4%)
- 발달장애인 지원 ('22) 2,080 → ('23안) 2,528억 원(447억 원, 21.5%)
- 장애아동가족지원 ('22) 1,492 → ('23안) 1,757억 원(266억 원, 17.8%)
- 장애인 개인예산제 운영(신규) ('23안) 6억 원(순증)

◇ 아동보호 국가 책임 강화

-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지원 : ('22) 397 → ('23안) 471억 원(74억 원, 18.7%)
-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: ('22) 381 → ('23안) 413억 원(32억 원, 8.3%)
-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: ('22) 275 → ('23안) 438억 원(163억 원, 59.3%)
-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체계 구축 ('22) 77 → ('23안) 129억 원(52억 원, 66.7%)

◇ 건강하고 질 높은 노후 생활

- 기초연금지급 : ('22) 161,140 → ('23안) 185,304억 원(24,164억 원, 15.0%)
-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: ('22) 14,422 → ('23안) 14,478억 원(56억 원, 0.4%)
- 지역사회 보건복지 연계 재가 서비스(신규) : ('23안) 35억 원(순증)

◇ 복지 사각지대 최소화

-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(정보화) : ('22) 4 → ('23안) 36억 원(32억 원, 88.9%)
(복지사각지대 발굴 관련)
- 청년정책 개발 및 지원체계 기반 구축(신규) ('23안) 3억 원(순증)
- 고독사예방관리체계구축 ('22) 10 → ('23안) 13억 원(3억 원, 31.5%)

2 복지 투자 혁신을 통한 복지-성장 선순환

◇ 사회서비스 활성화

- 사회서비스 투자 펀드 조성(신규) : ('23안) 100억 원(순증)
- 생활 사회서비스 투자사업(신규) : ('23안) 212억 원(순증)
-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: ('22) 246 → ('23안) 302억 원(56억 원, 22.8%)

◇ 예방적·사전적 투자 강화

- 모바일 헬스케어 : ('22) 66 → ('23안) 74억 원(9억 원, 13.0%)
-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운영 : ('22) 186 → ('23안) 190억 원(4억 원, 2.2%)
- 정신의료기관 환경개선 : ('22) 12 → ('23안) 15억 원(3억 원, 25.0%)
-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 : ('22) 451 → ('23안) 488억 원(37억 원, 8.3%)

◇ 안정적 양육환경 지원

- 부모급여(영아수당) 지원 : ('22) 3,731 → ('23안) 16,249억 원(12,518억 원, 335.5%)
- 영유아보육료 지원 ('22) 32,028 → ('23안) 30,069억 원(△1,959억 원, △6.1%)
- 어린이집 확충 ('22) 609 → ('23안) 492억 원(△117억 원, △19.3%)

3 국민 생명·건강 보호 및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

◇ 감염병 대응 인프라 확충 및 의료 지원 강화

- 긴급치료병상 확충 : ('23안) 2,573억 원
- 국립재활원 음압격리병실 구축 : ('23안) 35억 원
- 지역거점병원공공성강화 : ('22) 1,703 → ('23안) 1,506억 원(△197억 원, △11.6%)
- 의료 및 분만취약지 지원 ('22) 169 → ('23안) 168억 원(△1억 원, △0.3%)
- 고위험 산모·신생아 지원 ('22) 108 → ('23안) 102억 원(△6억 원, △5.7%)

◇ 디지털·바이오헬스 중심 국가 도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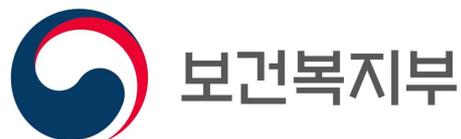
- 첨단 ICT기반의 차세대 암전문 정보 시스템 구축(정보화) : ('22) 4 → ('23안) 74억 원(70억 원, 1,568.4%)
- 의료 마이데이터 플랫폼 운영(정보화) ('22) 141 → ('23안) 97억 원(△44억 원, △31.1%)
- 휴폐업의료기관진료기록보관시스템 구축(정보화)(신규) : ('23안) 61억 원(순증)
- 의료기관 기반 디지털헬스케어 실증 및 도입 사업(R&D)(신규) ('23안) 75억 원(순증)
- 암생존자 중심 근거 기반 맞춤형 헬스케어 기술개발 및 실증 연구사업(R&D)(신규) ('23안) 96억 원(순증)

붙임 3

보건복지부 예산안 주요사업

2023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주요사업 15선

2022. 8. 30.



[목 차]

1. 생계급여액 확대, 재산기준 완화로 저소득층을 두텁게 보호합니다. 1
2. 재난적의료비 지원 문턱 낮추고 모든 질환으로 확대합니다. 2
3. 취약계층에 긴급복지를 신속하게 적극 지원하겠습니다. 3
4. 발달장애인과 장애아동 돌봄서비스를 두텁게 지원합니다. 4
5.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에게도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. 5
6. 장애수당, 15년 이후 처음으로 인상합니다. 6
7.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원이 더욱 강화됩니다. 7
8. 어르신들이 사는 지역에서 의료-돌봄서비스를 연계하여 건강한 일상생활을 보장합니다. .. 8
9. 사회서비스형 · 시장형 노인일 자리를 확대하여 베이비붐 세대 근로를 지원합니다. .. 9
10. 혼자 힘으로 생활하기 어려운 어르신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 10
11.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로 거듭납니다. 11
12. 부모급여로 영아기 돌봄을 두텁게 지원합니다. 12
13. 감염병 환자가 상시 입원 가능한 긴급치료병상을 확대합니다. 13
14. 국민이 필요할 때 편리하게 휴 · 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부를 발급해 드립니다. .. 14
15. 국민 정신건강 안전망 강화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합니다. 15

1. 생계급여액 확대, 재산 기준 완화로 저소득층을 두텁게 보호합니다.

(기초생활보장과 · 기초의료보장과, 민영신 · 백진주 과장, 044-202-3051 · 3090)

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증가율 인상 (4인 가구 기준 5.47%)

재산 기준 완화 (생계급여 +34,952가구, 의료급여 +12,687가구)

□ 주요 내용

- (급여 확대)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증가*로, 생계급여액 확대 (4인 가구 기준 최대급여액 154→162만원)

* 1인 가구 6,84% ↑, 2인 가구 6,01% ↑, 4인 가구 5.47% ↑

- (재산기준 완화)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 재산 공제 시 적용되는 지역 구분방식을 3급지→4급지로 개편*하고, 공제액 한도액 상향**

* 3급지(대도시/중소도시/농어촌) → 4급지(서울/경기/광역·세종·창원(특례시)/기타)

** 기본재산공제액 : (기존) 생계급여 3,500만원~6,900만원, 의료급여 2,900~5,400만원
→ (변경) 5,300만원~9,900만원

주거용재산한도액 : (기존) 생계급여 5,200만원~12,000만원, 의료급여 3,800~10,000만원
→ (변경) 11,200만원~17,200만원

⇒ 생계급여 34,952가구, 의료급여 12,687가구 신규 수급 예상

□ 사업 개요

- (생계급여) 소득인정액(소득평가액+재산의 소득환산액)이 기준 중위 소득 30% 이하인 경우, 그 차액을 지원(보충급여)

* 단,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연 소득 1억원(월 소득 834만원) 및 일반 재산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대상 제외

- (의료급여)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권자*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제외한 의료비 전액 지원

* 중위소득 40% 이하 가구, 국가유공자 등 타법에 따라 대상이 되는 자

2. 재난적의료비 지원 문턱 낮추고 모든 질환으로 확대합니다.

(의료보장관리과, 강준 과장, 044-202-2680)

지원대상 확대(외래 6대 중증질환→모든 질환)
의료비 기준 하향(연소득 15%→10% 초과시 지원),
지원한도 상향(연간 최대 3천만 원→5천만 원)

□ 주요 내용

- (질환 확대) 입원은 모든 질환, 외래는 중증질환 → 모든 질환
 - 다만, 미용·성형 등 비필수 의료비*는 현행처럼 지원 제외 유지
 - * 특실이용료, 효과 미검증 고가치료법 등의 의료비, 65세 이하 임플란트·틀니 등
- (한도 상향) 연간 3천만원 → 5천만원
- (기준 완화) 연소득 대비 의료비 15% → 10% 초과시 지원, 재산기준 5억 4천만원 → 7억원 이하

□ 사업 개요

- (지원 대상)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 중심으로 재산, 의료비 기준 충족시 지원
- (지원 내용) 본인부담상한제에 적용받지 않는 급여, 비급여 등 본인 부담금(치료외적 비급여* 제외)에 대하여 소득에 따라 80~50% 지원
 - * 미용이나 성형, 간병비 등 치료목적이 아닌 의료비
- (신청 방법) 국민건강보험공단(지사)을 통한 신청접수 및 지원
 - * (지원안내)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(www.nhis.or.kr)-재난적의료비 지원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(1577-1000)

3. 취약계층에 긴급복지를 신속하게 적극 지원하겠습니다.

(기초생활보장과, 민영신 과장, 044-202-3051)

생계지원금 단가 5.47% 인상(4인가구 기준 154만원→162만원)
지원대상자 15만명 확대(37만명→52만명)

□ 주요 내용

- (단가 인상) 기준중위소득 인상과 연계, 생계지원금 단가 5.47% 인상
- (기준 완화) 위기대상자를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한시적 재산 완화기준* 지속 운영토록 고시·지침 개정

*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운영(대도시 6,900만원~농어촌 3,500만원), 금융재산 생활준비금 공제율 확대 운영(기준중위소득 65% → 100% 상당)

□ 사업 개요

- (지원대상) 갑작스러운 위기사유로 생계유지등 곤란한 저소득층
 - 위기사유 : 실직, 사망, 중한 질병·부상, 가정폭력, 화재·자연재해 등
 - 소득재산기준 : 월소득 384만원 이하(4인가구)이면서 일반재산 241만원 이하(대도시)이면서 금융재산 600만원 이하(주거지원은 800만원)
- (지원내용) 생계지원(4인가구 162만원), 의료지원(1회 300만원), 주거지원(대도시 4인가구 64만원 이내) 등 (총 9가지)
- (신청방법)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(국번없이 129, 24시간상담) 또는 관할 시·군·구 긴급복지담당자에게 본인의 지원요청 또는 타인의 신고를 통해 지원요청 가능

4. 발달장애인과 장애아동 돌봄서비스를 두텁게 지원합니다.

(장애인서비스과, 백경순 과장, 044-202-3340)

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 신규 실시('23.4월~)
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제공시간 확대(+월 29시간)
발달재활서비스 대상자 확대 및 단가 인상(+1만명, +3만원/월)
장애아돌봄 서비스 시간 확대(+연 120시간)

□ 주요 내용

- (긴급돌봄)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긴급돌봄 시범사업 실시('23. 4월~)
- (주간활동) 제공시간 확대(기본형 월 125→132시간, 확장형 월 165→176시간)
- (발달재활) 대상자 확대(6.9→7.9만명) 및 단가 인상(월 22만원→25만원)
- (장애아 돌봄서비스) 중증장애아동 돌봄시간(연 840→960시간) 확대

□ 사업 개요

- (긴급돌봄)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입원·경조사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일시적으로 24시간 돌봄을 지원하는 시범사업 실시
- (주간활동) 성인 발달장애인(만18~64세)의 의미 있는 낮시간 보장을 위해 지역 내 협력기관(스포츠, 문화 등)과 연계한 프로그램 제공
- (발달재활) 성장기의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의 인지, 의사소통, 적응행동, 감각·운동 등의 정신적·감각적 기능 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적절한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및 정보 제공
- (장애아 돌봄서비스) 만 18세 미만 중증장애아동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가정에 장애아 돌보미를 파견하여 돌봄서비스 제공

5.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에게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
(장애인서비스과, 백경순 과장, 044-202-3340)

장애인활동지원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 신규 지원 및 대상자 확대(+1.1만명)
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단가 인상(+765원, 5.2% ↑)
 중증장애인 가산 급여 단가 인상(+1천원, 150% ↑)

□ 주요 내용

-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확대(+1.1만명)
 - (기본급여) 대상 확대(10.7→11.5만명, +0.8만명)
 - (신규지원)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자 활동지원서비스 신규 지원(2,720명)
- 활동지원 서비스 단가 인상(14,805→15,570원)
- (가산급여) 대상 확대(4→6천명, +2천명) 및 단가 인상(2,000→3,000원)

□ 사업 개요

- 만 6~65세 미만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에 따라 활동지원 서비스 기본 급여 제공(월 60~480시간)
- 최중증 장애인의 활동지원사 연계 강화를 위해 활동지원사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수당(가산급여) 지원
-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활동지원급여 신청 시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를 거쳐 보전급여 지원

6. 장애수당, 15년 이후 처음으로 인상합니다.

(장애인자립기반과, 신재형 과장, 044-202-3320)

장애수당 단가 : 재가 4→6만원, 시설 2→3만원(50% 인상)

□ 주요 내용

- (장애수당) 지원단가 50% 인상(재가 4→6만원, 시설 2→3만원)
 - 장애수당(기초) : 816억원, 260천명 → 1,429억원, 303천명(+43천명)
 - 장애수당(차상위 등*) : 608억원, 149천명 → 721억원, 128천명(△23천명)
- * 차상위 등 : 장애수당(차상위), 장애아동수당 포함

< '22년 대비 장애수당 지원 단가/월 >

구 분		생계·의료	주거·교육·차상위	기초(시설)
장애수당		4만원→ 6만원	4만원→ 6만원	2만원→ 3만원
장애아동 수당	중증	22만원	17만원	9만원
	경증	11만원	11만원	3만원

□ 사업 개요

- (지원대상) 만 18세 이상 기초·차상위 수급자 중 경증장애인*(종전3~6급)에게 장애수당을 지급하여 저소득장애인 가구의 생활 안정 도모
- (지원내용) 장애수당 6만원 지원(시설수급자 3만원)
- (신청방법)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급여 신청
- *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방문이 불가할 경우 전화, 우편 또는 팩스로도 신청 가능

7. 자립준비청년(보호종료아동)에 대한 지원이 더욱 강화됩니다.

(아동권리과, 송양수 과장, 044-202-3430)

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급액 인상(월 30만원 → 40만원, +10만원)
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사업 신설(약 8,000명 지원)

□ 주요 내용

- (자립수당) 아동복지시설, 가정위탁 보호 종료 후 5년 동안 지급 되는 자립 수당 지급액을 월 30만 원*에서 월 40만 원으로 인상
* ('22.1月~) 월 30만 원 → ('22.8月~) 월 35만 원 → ('23) 월 40만 원
- (의료비 지원) 자립준비청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의료급여(2종) 수준*으로 지원하는 의료비 지원 사업 신설('23.下~)
* 1차 외래 본인부담금 1,000원, 2·3차 외래 급여비 총액의 15% 본인 부담, 입원 급여비 총액의 10% 본인 부담, 약국 이용 500원

□ 사업 개요

- (자립수당) 아동복지시설, 가정위탁 보호 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 청년 본인 명의 계좌로 매월 40만 원 자립수당 지급
- (신청방법)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(행정복지센터) 또는 온라인(복지로 누리집(<http://www.bokjiro.go.kr>))으로 신청
- (의료비 지원) 아동복지시설, 가정위탁 보호 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 중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가 각종 의료서비스 이용 시 의료급여(2종) 수준의 본인부담금만 납부하도록 지원

※ 신청방법 등 세부 사항은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사업 실시 시 추후 안내

8. 어르신들이 사는 지역에서 의료-돌봄서비스를 연계하여 건강한 일상생활을 보장합니다.

(통합돌봄추진단, 손호준 단장, 044-202-3030)

지역 의료-돌봄 연계체계를 강화하는 신규 시범사업 추진 '23년 상반기 12개 지자체 공모 예정

□ 주요 내용

-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경험을 바탕으로, 재가의료서비스 확충 및 지역 의료-돌봄 연계체계를 강화*하는 내용의 신규 시범사업 추진
- * 커뮤니티케어 고도화 단계(2단계) 해당

□ 사업 개요

- (사업목적) 지역 내 의료·건강(health care)과 요양·돌봄(social care) 서비스를 수요자 중심으로 연계·통합하는 시범사업 추진
- (사업기간) '23~'25년(예정)
- (사업대상) 요양병원·시설 입원·입소 경계선에 있는 노인 등
- (사업내용) 방문형 의료서비스 확대 및 의료-돌봄서비스 간 연계
 - (방문형 의료서비스) 지역 특성(도시, 농어촌) 등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방문형 의료서비스(예: 재택의료, 방문간호 등) 확충
 - (의료-돌봄서비스 연계) 의료 또는 돌봄 공급기관 내 케어매니저 상담을 통해 수요자 욕구에 맞는 서비스 연계
- (추진일정) '23년 상반기 중 수행 지자체(12개) 공모

9. 사회서비스형 · 시장형 노인일 자리를 확대하여 베이비붐 세대 근로를 지원합니다.

(노인지원과, 주 철 과장, 044-202-3470)

다양한 근로 욕구를 가진 베이비붐 세대를 위한 맞춤형 사회서비스형·
시장형 일자리 확대(23.7→27.5만개, +3.8만개)

□ 주요 내용

- (일자리) 사회서비스형·시장형 일자리 3.8만개 확대*

* (사회서비스형) ('22) 7만개 → ('23) 8.5만개, (시장형) ('22) 16.7 → ('23) 19.0만개

□ 사업 개요

- (목적) 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 및 사회활동을 지원
- (대상) 만 65세 이상 (일부 유형 만 60세 이상)

(단위: 천개)

유형	내용	대상	사업량 (천개)	월평균 시간	보수/지원내역 (활동개월)
계			822		
공익활동형	지역사회 공익 증진을 위한 사회참여활동 (노년케어보육시설 봉사 공공의료 복지시설 등)	기초연금 수급자	547	30 (3시간, 10일)	월 27만 원 (11개월)
사회서비스형	경력과 역량 활용하여 사회적으로 필요한 영역에 서비스 제공 (교육시설 학습 보조 지원 공공행정 업무지원 등)	만 65세 이상 (일부 60세)	80	60 (3시간, 20일)	월 59.4만 원 (10개월)
선도모델	외부자원(인적·물적)을 활용한 사회서비스 분야 신노년세대 맞춤형 일자리	만60세 이상	5	개별 사업 내용에 따라 상이	
시장형	시장형 사업단	소규모 매장 및 전문 직종 사업단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노인일자리 창출 (살머커피 등)	만60세 이상	45	참여노인 1인당 연 267만원 내외 사업비 지원
	취업 알선형	관련 직종 업무능력 보유자를 수요처로 연계 (청소경비 등)		88	알선 수행기관에 15만원 (또는 5만원) 사업비 지원
	시니어 인턴십	기업 인턴(3개월) 후 계속 고용 유도 목적 인건비 지원 (산업 안전전기조선업 등)		55	기업에 최대 240만원(월 40만원*6개월) 지원
	고령자 친화기업	노인 다수 고용기업 설립·우수고용기업 지원		2	최대 3억원 이내 보조금 민간 기업에 지원

10. 혼자 힘으로 생활하기 어려운 어르신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
(노인정책과, 이윤신 과장, 044-202-3465)

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확대(50만 명→55만 명, +5만 명)

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일자리 확대(33,203→36,524명, +3,321명)

□ 주요 내용

- (대상자) 노인 인구의 급속한 증가에 대응하여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대상자 확대(+5만 명)
 - * '22년 50만 명 → '23년 55만 명
- (일자리) 대상자 확대(50→55만 명)에 따라 종사자 인력 확대(+3,321명)
 - * '22년 33,203명 → '23년 36,524명

□ 사업 개요

- (지원대상) 65세 이상 기초수급자·차상위·기초연금수급자 중 독거·조손가구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
- (지원내용) 안전지원, 사회참여, 생활교육, 일상생활분야의 다양한 서비스를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라 직접 또는 연계 제공
 - 방문형, 통원형(그룹형 프로그램) 등 제공형태 다양화
 - * 각 대상자의 돌봄 욕구·필요 정도에 따라 제공시간, 서비스 내용 등 지원 수준 다름
- (신청방법)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노인 또는 그 가족 등이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 등을 통해 서비스 신청
 - *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방문이 불가할 경우, 전화, 우편 또는 팩스로도 신청 가능

11.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로 거듭납니다.

(사회서비스정책과, 임은정 과장, 044-202-3210)

(사회서비스사업과 김민정 과장, 044-202-3220)

**사회서비스 혁신 펀드 신규 조성(민간투자 포함 140억 원 규모)
청년, 중장년 1인 가구 등의 일상을 지원하는 사회서비스 신규 개발
사회서비스 공급기관 지원·투자 기반 조성(+26억 원)**

□ 주요 내용

- (펀드 조성) 혁신적인 사회서비스 제공기관*에 대한 투자지원을 위한 펀드 신규 조성(국가 100억 원+민간 40억 원, 총 140억 원 규모)
 - * 고품질 서비스 개발·보급, 사회적 가치 제고 등 우선 고려
- (생활 사회서비스) 가족 돌봄 청년, 중장년 1인 가구, 한부모 가구 등 약 32천 가구 대상 생활 사회서비스*(월평균 20만 원) 개발·보급 추진
 - * (예시) 가사 지원 서비스, 병원 동행 서비스, 심리상담 등
- (기반 조성) 서비스 제공기관 사업모델 컨설팅, 투자 매뉴얼 개발, 역량 강화 교육 등을 통해 혁신 인프라 강화

□ 사업 개요

- (펀드 조성) 정부 출자 및 민간투자자 모집을 통해 사회서비스 투자 재원을 마련하여 혁신적인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에 지원·투자
- (생활 사회서비스) 가족돌봄청년, 중장년 1인 가구, 한부모 가구 등 대상별 욕구 유형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 개발 지원
 - *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 차등화
- (기반 조성) 중앙 사회서비스원에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대상 컨설팅, 교육 실시 등 전담 기관으로서 역할 수행

12. 부모급여로 영아기 돌봄을 두텁게 지원합니다.

(보육사업기획과, 홍승령 과장, 044-202-3560)

지원 수준 확대(0세 300→700천원 / 1세 300→350천원)

□ 주요 내용

○ 만 0~1세 아동에게 부모급여 지급

* ('22년) 만 0~1세 아동에게 월 30만원 지급 →

('23년) 만 0세 아동에게 월 70만원, 만 1세 아동에게 월 35만원 지급

□ 사업 개요

○ (지원대상) 만 0~1세 아동(24개월 간 지급)

○ (지원내용) 만 0세 월 70만원, 만 1세 월 35만원('23년)

○ (신청방법) 온라인신청(①복지로(www.bokjiro.go.kr) ②정부24(www.gov.kr))
또는 주민센터(행정복지센터) 방문 신청

13. 감염병 환자가 상시 입원 가능한 긴급치료병상을 확대합니다.

(중수본 환자병상 · 치료시설팀, 곽순현 팀장, 044-202-1790)

긴급치료병상 확대(617→2,317병상, +1,700병상)

□ 주요 내용

- 코로나19 등 감염병 환자가 상시 입원 가능한 긴급치료 및 응급·특수병상(소아·분만·투석) 확대(+1,700병상, +2,573억원)
* '22년 617병상 → '23년 2,317병상

□ 사업 개요

- (목적) 감염병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상시병상을 구축하여, 장기적으로 활용 가능한 감염병 대응시설 구축
- (설치방안)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등 치료역량이 높은 의료기관에 전담치료병상 확충(시설·장비) 비용 지원(국비 50%)
* 긴급치료병상은 기존 시설과 공조, 수도, 냉난방 등 분리·설치 필요
- (운영방안) 전담치료병상은 평상시 일반환자 치료에 이용하고, 감염병 발생시 코로나19 등 감염병 환자 치료에 이용

14. 국민이 필요할 때 편리하게 휴·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부를 발급해 드립니다.

(보건의료정책과, 고흥우 과장, 044-202-2420)

휴·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 구축(신규) +60.5억원

□ 사업 개요

- (사업취지) 개별 보건소 및 의료기관에서 관리하던 휴·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을 시스템 구축을 통해 안전하게 보존·관리하고 국민이 필요할 때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는 체계 마련
- (주요내용) 휴·폐업한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를 보관*·발급하기 위한 진료기록보관시스템 구축(1차년도, 60.5억원)
 - * 기존 : 보건소 보관 또는 보건소장의 허가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 직접 보관
 - 휴·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 발급의 편의성 향상을 위한 대국민 온라인 발급 서비스 제공
 - 진료기록 보관의 안전성 및 보건소 행정부담 감소를 위한 시스템 설계
 - * 연도별 시스템 구축방안('23~'25) : 진료기록 보관시스템 1차 구축('23), 행정시스템 연계·모바일 서비스 공급('24), 시스템 구축 완료('25)
- (수혜대상) 휴·폐업 의료기관 이용 환자 및 개설자, 전국보건소

□ 기대효과

- 휴·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 보존·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, 연금·보험 청구에 필요한 진료기록의 온라인 원스톱 발급서비스 제공

15. 국민 정신건강 안전망 강화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합니다.

(자살예방정책과, 원소윤 과장, 044-202-3890)

(정신건강정책과, 김한숙 과장, 044-202-3860)

자살고위험군 치료비 지원사업 신설, 자살예방 전담인력 증원(+33명)
정신의료기관 환경개선 사업 확대(정신의료기관 20→30개소)

□ 주요 내용

- (자살 고위험군 지원 강화) 자살 고위험군* 치료비 지원사업 신설,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(101개소) 및 자살 유족 지원(9개 시도) 지속 추진
 - * 치료가 필요한 자살시도자·자살 유족 중 저소득층(1인당 年 100만원 이내)
- (자살예방센터 인력 확충) 자살예방법 개정("22.8.)*으로 자살고위험군 정보 연계 및 사례관리 인원 증가에 따른 전담인력 증원(467→500명(+33명))
 - * 경찰, 소방에서 당사자 동의 이전에 자살예방센터로 자살시도자 등 정보 연계 및 사례관리 근거 마련
- (정신의료기관 환경개선) 감염병 예방, 정신질환자 인권 보호* 등 정신의료기관 입원환경을 치료 친화적으로 개선(20→30개소)
 - * 정신의료기관의 보호실에 차폐시설 없이 침대·변기 설치는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 결정 등("20.6월) 정신질환자 인권 보호에 대한 요구 증가

□ 사업 개요

- (자살 고위험군 지원 강화) 정신질환자 및 정신과적 어려움을 겪는 전 국민 대상으로 사업 추진
 - 주소지 정신건강복지센터 방문상담 및 자살예방 전화상담(1393)
- (정신의료기관 환경개선 사업) 정신의료기관 대상으로 공모 절차를 통하여 사업수행기관 선정, 국고보조율 50%(자부담 50%)